

용문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용문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식 CCTV를 설치함에 따라,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
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
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6. 2.

용 문 면 장



1. 설치목적 :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
2. 설치장소 : 1개소(1대)
3. 예고방법 : 용문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예천군 홈페이지 공고
4. 예고기간 : 2023. 6. 2. ~ 6. 22.(21일간)
5. 설치 예정지

연번	주 소	대수	비고
1	예천군 용문면 두천리 8-2번지	1	

6. 관련법규

가.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·제한)

나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
다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라.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7. 의견제출 방법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용문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방문,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과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연락처 등

다. 의견 제출기간 : 2023. 6. 2. ~ 6. 22.(21일간)

라. 문의 및 의견제출

1) 우편 - 경북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길 54, 용문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

2) 전화 - 054-650-8392

3) 팩스 - 054-650-6682

마. 기타사항 :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